

한국수출입은행 운영위원회규정

제 정 : 1976. 7. 1
1차개정 : 1977.12.23
2차개정 : 1978. 5.16
3차개정 : 1978. 7. 4
4차개정 : 1980. 7. 7
5차개정 : 1987. 3.17
6차개정 : 1995. 2.27
7차개정 : 2000. 4.10
8차개정 : 2006. 7. 3
9차개정 : 2008. 7.10
10차개정 : 2013. 5.14
11차개정 : 2016.12.22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원활한 운영을 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구성)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한국수출입은행장
2. 기획재정부장관 · 외교부장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국토교통부장관 · 해양수산부장관과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 각 1명
3. 한국은행총재와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전국은행연합회의 장이 그 집행간부나 이사 중에서 지명하는 자 각 1명
4. 기획재정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수출업자 단체의 대표자 중에서 지명하는 자 1명
5. 「무역보험법」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사장이 그 임원중에서 지명하는 자 1명
6. 대외경제협력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수출입은행장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2명 이내

② 위원회의 의장은 제1항 제2호의 위원이 소속된 부처 외의 부처와 관련되는 의안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처의 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 1명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제4호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 3 조(참관위원)

(1987. 3.17 삭제)

제 4 조(의장)

- ① 위원회의 의장은 한국수출입은행장(이하 “은행장” 이라 한다)이 된다.
-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제2조제1항제2호의 위원 중 기획재정부소속위원, 외교부소속위원, 산업통상자원부소속위원, 국토교통부소속위원, 해양수산부소속위원, 금융위원회소속위원의 순위로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 5 조(소집)

- ① 위원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이를 소집한다.
- ② 의장은 재적위원 과반수나 감사가 요구하면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 ③ 의장은 회의의 일시와 회의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개최 2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 6 조(의결사항)

위원회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업무방법서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연도별 업무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결산, 잔여이익금의 처리 및 손실보전에 관한 사항
5. 법, 시행령, 정관 및 업무방법서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는 사항
6. 기타 업무운영, 관리에 관한 기본방침으로서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6 조의2(보고사항)

위원회에 대한 보고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으로서 정부, 기타 관계당국에 의하여 변경 또는 부결된 사항
2. 법령, 기타 타규정에서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된 사항
3. 기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7 조(의결방법)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집에 의하지 아니하고 문서에 의한 의결로서 갈음할 수 있다.

제 8 조(회의참여)

한국수출입은행 전무이사, 담당이사, 감사 및 상정된 안건의 관련부서장은 소관안건에 관하여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 9 조(의견의 청취)

의장은 필요에 따라 관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의결권행사의 제한)

위원회의 의결에서 해당 의안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11조(의장의 긴급조치)

- ① 의장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즉각적 행위가 필요한 경우에 위원회를 소집할 수 없으면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위원회 권한의 범위에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②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는 제1항의 조치를 확인, 수정 또는 정지할 수 있다.

제12조(의사록)

- ① 한국수출입은행 의사담당부서장은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사록을 작성한다.
- ② 의사록은 2부를 작성하여 정본은 기록물관리담당부서로 이관하고 부분은 의장이 따로 지정하는 곳에 보관한다.
- ③ 의사록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1. 개회, 폐회의 일시
 2. 출석 또는 결석한 위원과 기타 출석자의 성명
 3. 회의사항 및 의결사항
 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④ 제3항의 의사록을 작성하였을 때에는 의장과 의사담당부서장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13조(사례금)

제2조 제1항의 위원 및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참석하는 자에 대하여는 회의비, 안전검토비 등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제정) ~ 부 칙 (10)

(기 재 생 략)

부 칙(11)

이 규정은 2016. 12. 22부터 시행한다.